

「공공의료·복지를 선도하는 최고의 파트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22년 요양보호직, 업무지원직(위생·경비), 장애인 청년인턴 공개채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해보훈요양원」에서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과 지역주민의 요양보호, 주간보호센터 운영 및 노후 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모집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해보훈요양원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 하고 ‘정의’로운 채용을 위해 채용절차의 전 과정을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실시합니다.

2022년 05월 26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해보훈요양원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 채용분야

고용형태	직종	직무	채용인원
정규직	요양보호직	요양보호사	1
정규직	업무지원직(위생·경비)	청소	1
계약직	청년인턴	청년인턴	3

☐ 응시자격

채용분야	채용인원	자격요건
요양보호직	1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3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 - 제1종 보통 운전 면허 소지 및 운전 가능자 우대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라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채용분야	채용인원	자격요건
업무지원직 (위생·경비)	1	- 휴일 및 주말근무 가능자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 업무지원직 인사관리 시행세칙 제13조(정년)에 따라 정년(만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장애인 청년인턴	3	- 공공기관 미취업자 고용확대를 위하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시행령에 따른 청년 ※ 연령(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 15세 이상 34세 이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 직원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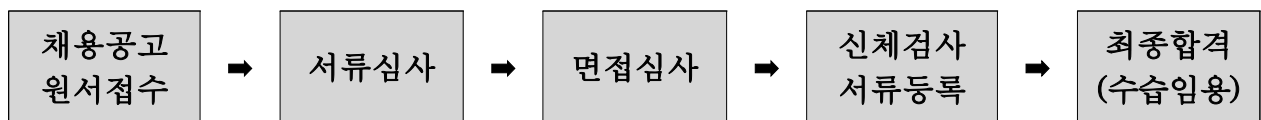
채용분야별 운영형태

채용분야	고용형태	운영형태 및 계약기간
요양보호직	정규직	- 3개월 수습기간 중 수습근무평가표 작성 후 60점 이상인 경우 정식 임용(60점 미만일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직) - 요양보호사 시설 업무(3교대) - 임용일: 2022.07.01.
업무지원직 (위생·경비)	정규직	- 3개월 수습기간 중 수습근무평가표 작성 후 60점 이상인 경우 정식 임용(60점 미만일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직) - 요양원 위생(청소)관리(휴일 및 주말근무 포함) - 임용일: 2022.07.01.
장애인 청년인턴	계약직	- 청년인턴 업무 - 임용일: 2022.07.01. - 계약기간: 2022.07.01.~12.31.

3

채용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구 분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 종
배 분	서류심사	100점	100점
가 점		5%~10% (10점 이내)	10점 이내
전형별 합격결정	필수자격요건	· 면접점수 60%이상	최고득점자

전형구분		내 용	전형별 합격결정	비 고
1차	서류전형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 자격요건 충족자 전원선발	
2차	면접시험	· 직무역량및 업무수행능력 태도 등	- 면접(100) + 가점(5~10) 합산 고득점 순	블라인드 면접
3차	신체검사 서류등록	· 적·부 판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및 접수	'22.05.26.~06.10. 17:00	채용사이트 접수
서류 합격 발표	'22.06.13. 17:00	홈페이지 및 문자안내
면접 시험	'22.06.15.	시간·장소 별도 홈페이지 공고
면접 합격자 발표	'22.06.16. 11:00	홈페이지 및 문자안내
합격자 서류등록	'22.06.20.~24.	
채 용	'22.07.01.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 신체검사 비용은 면접시험 합격자 본인부담

※ 면접전형 합격자라도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2에 의한 신원조회 이상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9에 의한 노인학대 경력자, 공단인사규정 제18조에 의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4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2.05.26.(목)~06.10.(금) 17:00

○ 접수방법: 온라인 제출 (<http://recruit.incruit.com/bohun>)

- ▷ 접수마감일('22.06.10.) 17:00까지 제출한 서류에 한해서 접수
- ▷ 블라인드 채용 진행으로, 지원서 및 증명서 제출 시 사진·학력·성별·나이·출신지 등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자체 비공개 처리하여 제출 바랍니다.
- ▷ 증빙서류는 응시자격·우대가점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면접위원회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채용분야	제 출 서 류
요양보호직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요양보호사 자격증 스캔본 - 채용우대사항 대상 증명서 1부(해당자)
업무지원직 (위생·경비)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채용우대사항 대상 증명서 1부(해당자)
장애인 청년인턴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장애인 증명서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 서류접수 시 증명서 제출자에 한하여 가점 부여(해당자)

5

우대사항

구분	대 상	해 당 자	가산점수 및 부 가 점 수	비 고
법정 가점	취업지원 대 상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제2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각 시험별 만점 의 10%	합격인원의 30% 범위 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제2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각 시험별 만 점의 5%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각 시험별 만점 의 10%	

구분	대 상	해 당 자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비 고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필기시험 만점의 5%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필기시험 만점의 5%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필기시험 만점의 5%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필기시험 만점의 5%	
경력가점	공단근무경력자	일반기능직, 복지 기능직으로서 2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각 시험별 만점의 10%	합격인원의 30% 범위 내
	청년인턴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필기시험 만점의 2%	청년인턴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함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중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필기시험 만점의 3%	
자격가점	자격(면허)소지자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사1급 이상	필기시험 만점의 10%	당해직종에 한하여 1인 1종 이상인 경우에는 1종만 적용

주) 각 시험 : 채용업무시행세칙 제9조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6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는(최종합격자 제외) 공고마감일로부터 30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우리 요양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단의 귀책사유 없이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을 작성하여 우리 요양원 팩스(0504-841-1214) 또는 이메일 (tndyd7621@bohun.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공단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공고마감일로부터 30일간 제출

한 채용서류를 보관 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입사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입사 후 발견 시 합격 취소 가능)
- 응시자가 저조하거나 적합한 인재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따른 장애인의 경우 해당 가산점을 적용합니다.
- 최종합격자 통보 후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입사 후 발견 시 합격 취소)
-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에 차 순위자와 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는 임용일 즉시 근무 가능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김해보훈요양원 운영과(☎055-340-8522)로 문의 바랍니다.